

의안번호	2203445
의 퇴 인	황희의원
회 답 일	2024.10.30.
추계번호	24D334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제3항(취업지원 등)	국가는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의 지원을 하여야 함 또한, 필요하면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의무규정 재량규정
2	안 제23조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음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4조제3항(취업지원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3조제1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현행법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지원을 하기 위해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¹⁾을 추진하고 있음

-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은 제대군인지원센터운영, 직업교육훈련지원, 제대군인수업료보조, 제대군인 지원정책개발 및 홍보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18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표 1] 연도별 전역자 수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신규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구분	2019	2020	2021년	2022년	2023년
중장기 제대군인	전역자	7,676	7,231	6,785	7,639	9,481
	신규가입	5,801	5,584	7,276	8,536	9,420
경상이자	전역자	1,599	864	880	597	696
	신규가입	89	76	53	32	42
취업맞춤 특기병	전역자	1,027	1,446	1,554	1,778	1,807
	신규가입	268	299	196	129	122
저소득 모범장병	전역자	-	119	112	36	91
	신규가입	-	31	18	5	6
합계	전역자	10,302	9,660	9,331	10,050	12,075
	신규가입	6,158	5,990	7,543	8,702	9,590

주: 경상이자는 개정안에서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중상이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취업지원을 받고 있음)을 의미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의 경우 전역년도와 관계없이 회원가입년도를 기준으로 산정

자료: 국가보훈부

- 2023년 기준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 수는 108,650명, 취업자 수 6,852명임

[표 2] 제대군인지원센터 실적

(단위: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회원 수(명)	78,215	83,669	91,765	97,215	108,650
취업자 수(명)	6,754	6,770	6,846	6,828	6,852
고용유지율(%)	63.9	61.8	62.3	59.3	62.4

주: 회원수는 누적회원수이며, 취업자 수는 해당연도 취업자수임

자료: 국가보훈부

- 개정안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게 진로·

1) 코드: 4160-390

직업상담, 취업알선 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상담사 증원, 제대군인지원센터 증설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 다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현행에 비해 상담사 증원규모, 제대군인지원센터 증설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진로지원센터 회원가입,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업무의 특성 상 당사자의 필요 및 신청의사가 중요함
 - 또한, 개정안에서 추가 대상자로 지정된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경상이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률이 6.3%로 저조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표 3] 경상이자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 현황

구 분	신규대상자 (A)	이용자 수(B)	이용률(B/A)
경상이자	4,636	292	6.3%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경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수입감소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증가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그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